

# 평생회원 운영 관리 규정

(제5차 개정 13. 6.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제2호의 평생회원 및 평생회원 회비(이하 ‘평생 회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회원의 정의) 평생회원은 본 연맹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동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인사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평생회원의 종류) 평생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입한 인사
2. 단체회원 :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두며, 평생회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평생회원의 회비) ① 평생회원의 회비는 정관 시행세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 규정 제정 시 평생회원의 회비는 아래의 기준을 정한다.(개정 13. 6. 27.)

구 분		회 비	특 전
평생회원	단체	특별회원	1,000만원 이상 ·평생회원 증서 및 평생회원 패(별표 1)
		일반회원	500만원 이상 ·연맹 회관 벽면 대리석에 단체명 각인
	개인회원	100만원 이상 (골드회원)	(공통) ·평생회원 증서, 회원 메달 증정 (별표2) ·회원카드 (별표4) ·금배지 증정(별표3) ·정기간행물 증정 ·연맹회관 벽면 성명 각인 ·전국행사 및 문화행사 초대
		50만원 이상 (실버회원)	·은배지 증정(별표3) ·정기간행물 증정 ·전국행사 및 문화행사 초대
		30만원 이상 (일반회원)	·전국행사 및 문화행사 초대

제5조(평생회원의 등록) ① 평생회원은 소정의 평생회원 신청서와 평생회비를 납입하여 중앙본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록 절차는 가맹등록규정을 준용한다.

② 평생회원의 등록 유효기간은 회원의 생존기간으로 한다.

제6조(평생회원의 관리) 평생회원은 중앙본부에서 관리한다. 다만, 회원의 요청에 의해 지방·특수연맹에 소속 활동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제7조(평생회원의 전적) ① 평생회원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소속 연맹에서 전적

## (평생회원 운영 관리 규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소속 연맹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회원의 전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평생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생회비의 운용 및 관리) ① 평생회비의 관리는 중앙본부 회계규정에 의거 운용한다. (개정 99. 12. 17.)

② 평생회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평생회비의 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는 회계규정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평생회원의 관리 및 평생회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평생회원 운영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헌장 제39조, 동 41조, 동 42조를 준용한다.

제10조(평생회비의 결산) 평생회비의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